

축산법 중 가축인공수정에 관한 법률만 발췌하였음

가축개량 축법산령 조문

축산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일부개정 2002. 12. 26 법률 제 6821호</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 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유통 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 12.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이라 함은 사육하는 소, 말, 산양, 면양, 돼지, 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 가금등을 말한다. “종축”이라 함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축산물”이라 함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 젖, 알, 끌과 이들의 가공품, 원피(원모피를 포함한다) 원모 기타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화업”이라 함은 인공부화 시설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을 부화하여 판매(다른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 	<p>일부개정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9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일부개정 2001. 6. 19 농림부2령 제01387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1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 가금”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새, 당나귀, 토끼, 개 및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매추리 꿀벌 기타 야생습성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 가금 및 관상용 조류 <p>제3조(축산물의 종류) 법 제2조 제3호에서 “기타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뼈(골분을 포함한다). 뿔, 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 화분 <p>제4조(부화업 대상의 알)</p> <p>법 제2조 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이라 함은 닭 및 오리의 알을 말한다.</p>

축산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는 업을 말한다.</p> <p>5. “종축업”이라 함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으로부터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p> <p>6. “계란집하업”이라 함은 닭의 알을 수집하여 선별, 포장한 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p> <p>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p> <p>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 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 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라 함은 돼지, 닭, 및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닭의 알을 말한다.</p> <p>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종계로 확인된 닭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p> <p>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결과가 음성인 닭에서 생산된 알</p>
<p>제2장 가축개량 및 인공수정 등</p> <p>제5조(개량목표의 설정)</p> <p>①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량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도의 가축개량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p>	<p>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p> <p>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대상 가축별로 개량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축종의 생산자 단체와 학계, 업계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대상 가축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2장 가축의 개량, 등록, 검정 등</p> <p>제6조(개량대상가축)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대상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및 말로 한다.</p>

축산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목표의 달성과 가축개량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산관계기관 및 단체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④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가축의 인공수정등)</p> <p>①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 란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 처리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으로부터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대하여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p>	<p>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개량총괄 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개량총괄 기관 및 가축개량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기관은 가축개량에 관한 국내, 외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축종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p> <p>①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축개량총괄 기관(이하 “가축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종별 개량목표 설정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2. 개량계획에 의한 사업의 평가 3. 가축개량기관간의 개량 사업의 협의, 조정 4. 가축개량 관련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5. 기타 가축개량 촉진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②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이하 “가축개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량사업계획 개량사업결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축산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필요한 경우 		<p>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p>
<p>제11조(수정사의 면허)</p> <p>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수 있다<개정 2001. 1. 26></p> <p>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분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p>	<p>제11조의2(수정사의 면허)</p> <p>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p> <p>[본조신설 2001. 6. 22]</p> <p>[종전 제11조의 2는 제11조의 3으로 이동<2001. 6. 22>]</p>	<p>제13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p> <p>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정사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 합격증 사본 2.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3. 삭제<2001. 6. 19> <p>② 시, 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대장을 비치하고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③ 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면허를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p>

축산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2.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시험에 합격한자		<p>면허증을 잃어버린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4조(수정사시험)</p> <p>① 시, 도지사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일시, 장소, 과목 응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험과목은 축산학 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로 한다.</p> <p>다만,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자는 축산학개론, 가축번식학, 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p> <p>④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4 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p> <p>⑤ 시, 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5조(시험위원회)</p> <p>① 시험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수의과 또는 축산관련 학과의 교수</p> <p>2. 축산직, 축산연구직, 수의직, 가축위생연구직, 기타</p>

축산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축산관계 공무원</p> <p>3. 5년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정사</p> <p>②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도지사가 정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2. 정신병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 <p>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사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면제 및 합격 기준등 수정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수정사의 교육)</p> <p>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수정사의 교육)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수정사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의 장소, 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일 30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3조(수정사의 면허취소)</p> <p>시, 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p>제14조(정액등 처리업의 등록)</p> <p>① 종축으로부터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 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이하 “정액등 처</p>		<p>제17조(정액등 처리업의 등록)</p> <p>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 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p>

축산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 등 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 처리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정액등 처리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할 때 또는 등록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 등 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액처리업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사, 채취장, 제조실 및 보관실등의 시설 배치도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채취, 검사, 허석, 분주(分注), 인쇄, 보관 및 소독 등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의 비품 명세서 정액등의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삭제<2001. 6. 19> <p>③ 시, 도지사가 정액 등 처리업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정액등 처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정액 등 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액 등 처리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7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휴업한 영업의 재개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p>⑤ 법 제14조 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축산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④ 정액등 처리업자는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을 통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보유종축의 정기검진 및 그 기록유지</p> <p>2. 감염이 확인된 종축의 격리 또는 도태와 당해 종축으로부터 생산된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의 회수, 폐기</p>		<p>1. 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취급품목 ⑥ 정액 등 처리업자가 제 5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 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2001 .6. 19> ⑦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 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이상 관할 가축위생담당기관이나 축산관련연구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결과를 3년간 기록, 보존할 것 가. 전염성 질환과 의사증 나. 유전성 질환 다.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진 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가.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 치료하여야 하며, 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 생산되어 공급, 비축된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은 즉시 회수, 폐기할 것</p>

축산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15조(정액등 처리업의 등록 취소 등) 시, 도지사는 정액등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4조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발급한 때 4.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 주입하거나 암 가축에 이식 한 때 <p>제 16조(수정소의 개설신고등)</p> <p>①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 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행정처분기준)</p> <p>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액의 수급에 차질을 가져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p>
		<p>제19조(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① 법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의 개설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 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가축인공수정소 개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 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3. 삭제<2001. 6. 19>

축산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을 재개한 때 또는 신고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시장, 군수는 수정소의 개설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 10호 서식의 수정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16조 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수정사 또는 수의사 <p>⑥ 수정소 개설자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2001. 6. 19>
<p>제17조(징액증명서 등)</p> <p>① 정액 등 처리업자는 그가 처리한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액증명서, 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p>		<p>제20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① 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 처리하여 공급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정란 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p>

축산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인공수정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 등 처리업자,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발급하는 정액(난자) 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며,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정액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 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증명서, 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 2.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		제21조(정액등의 사용제한) 법제1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 주입, 이식할 수 없는 정액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혈통, 뇌,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액 2.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60 이하이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15이상인 정액 3. 제17조 제7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질환의 원인 미생물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 4. 수소이온농도가 현저한 산성 또는 알카리성으로 수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
제 19조 (정액등 처리업자등에 대한 감독)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액등 처리업자, 정액유통업자 또는 수정소 개설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설과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정액등 처리업자등에 대한 감독)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정액 등 처리업자 및 수정소 개설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한 정액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정액 처리업자 및 수정소 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등이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축산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제19조의 2(우수 정액등 처리업체의 인증)① 농림부장관은 정액등 처리업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가축개량을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p> <p>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02. 12. 26]</p>		

※ 지면관계상 별표 및 각종서식은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2003. 12. 31
(농림부고시 제2003-57호)

●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1.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2. 가축개량기관

축종	가축개량기관
한우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도 축산기술연구소, 농협중앙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젖소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도 축산기술연구소, 농협중앙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돼지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도 축산기술연구소, 대한양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닭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도 축산기술연구소, 대한양계협회 축산물등급판정소
말	한국마사회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농림부 고시 제 1995-11호(1995. 3. 4)로 시행되던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 기관의 업무는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농림부 고시 제 1995-11호(1995. 3. 4)는 이를 폐지한다.